

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10459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나1045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3716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5. 25.

판결 선고 2017. 7. 6.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가단2371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6.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해 92,8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를 철거하여 위 철거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2,925,600원과 2016. 5. 3.부터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해 393,6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5,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를 철거하여 위 철거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936,518원과 2016. 5. 3.부터 위 철거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해 300,7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의 나.항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망 E의 상속인들로부터 망 E의 원고에 대한 주차요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양수한 주차요금 채권으로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피고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을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06년경부터 피고 토지를 망 E에게 임대하였고, 망 E는 그 무렵부터 피고 토지 위에서 주차장을 운영해 왔는데, 원고가 2006. 4.경부터 2015. 12.경까지 월 5만 원 상당의 주차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 토지 위에 자신의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한 사실, 피고가 망 E의 상속인들 중 I, J로부터 망 E의 원고에 대한 주차요금 채권 중 그들의 상속분¹⁾ 만큼을 양수한 사실(이하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위 I, J의 양도통지서가 편철된 피고의 2017. 4. 13.자 준비서면이 2017. 4. 13.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양수한 주차요금 채권은 그 양수 이전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원고의 수동채권 중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7. 5. 25.까지 발생한 채권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함으로써 원·피고의 양 채권은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2017. 4. 13.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상계의사표시가 담긴 2016. 11. 9.자 항소이유서가 2016. 11. 1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로써 2017. 5. 25.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액 2,087,739원²⁾은 피고의 양수금 채권액 2,659,090원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 모두 소멸하였다[다만 위와 같이 상계하고 남은 피고의 양수금 채권액 571,351원(= 2,659,090원 - 2,087,739원)에 의한 상계는 그 수동채권인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의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만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어서 상계적상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허용될 수 없다].

피고는 I, J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로부터도 원고에 대한 주차요금 채권 중 그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J이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위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을 제1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 E에게 주차요금을 일부 지급하기도 하였고, 망 E가 주차요금 채무를

면제해주었으므로 피고가 양수한 주차요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차요금 중 일부를 변제하거나 그 전부를 망 E로부터 면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5. 26.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라' 부분 1㎡'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해 92,809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10년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 소유 토지에 무단 주차하는 방식으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따라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지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칙,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승호

판사이강은

판사김지영

별지

이하 같다)

2) 1,989,082원 + 98,657원(92,809원×388일/365일)